

#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과제

안황권\*

## 요 약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공경비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결국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시큐리티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비협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격은 교육과 노동 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의 활용 실적이나 미비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Necessity and Task of Qualification System in Protection Specialist Guard

Ahn, Hwang-Kwon\*

### ABSTRACT

Quantitative rise and qualitative seriousness in crime have limitation to preventing crime just with public police security. Ultimately, in order for private security guard to fulfill the duty of preventing crime, its members' excellent quality and ability need to be preceded. This change in the environment of crime prevention came to demand professionalism in the security field. Furthermore, it became an opportunity of being emerged the necessity of specialist qualification. For this, first, there is a need of reinforcing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security guard association, and of vitalizing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Second, qualification functions as linking education and labor market. Thus, many qualification acquirers need to strengthen direction that the security guard company can reflect and utilize this. Third, there is a need of positively supplementing the result of utilizing qualification or the insufficient management system so that the private security guard qualification system can be recognized as the qualification system of being authorized by the country.

**Key words :** Private security guard, Private security, Crime, Certified Security Certification, Security Industry,

## 1. 서 론

민간경비관련 자격증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제도가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법률 제5124호) 개정으로 도입되어 1997년 처음 선발시험을 실시한 것이 처음이다. 경비요원 관련 자격제도는 2005년 한국경비협회 CEO 세미나에서 도입을 주장한 이래 5회 실시하였으나 아직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1997년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민간자격증의 홍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자격증이 발행되고 있으나 경비원관련 자격제도는 취약하고 그나마 개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가공인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의 공급 주체인 경찰과 함께 상호 협력과 역할분담을 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서 그 기본적인 목적인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시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민간경비 종사자는 고도의 훈련과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능력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자격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확신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에게는 신뢰로서 작용한다. 또 자격제도는 교육훈련의 결과를 외부로 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따라서 자격소지자에게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고객에게는 신뢰감을, 기업에게는 탐색과 교육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5]

본 연구는 민간경비분야의 민간자격제도 특히 신변보호 관련 자격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2.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실태

### 2.1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필요성

#### 2.1.1 치안환경의 변화

오늘날 각종 범죄가 양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지능화, 고도화, 흉포화 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강도범죄, 사기범죄, 사이버범죄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공경비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범인의 검거보다는 범죄를 예방하여 범죄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줄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은 범죄가 이미 발생한 경우 그 범죄에 대한 피해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범죄자의 검거·교정 등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 속에서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증 등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 2.1.2 경비업체 신뢰성 제고와 경비원의 전문화

공경비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면, 사경비는 경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민간경비를 수행하는 경비업은 고객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민간경비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는 경우 공경비를 보완하는 역할은 물론 치안공동생산 등을 통하여 개인의 방법·방재활동 등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치안이 강화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다.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안전 담당자로서 전문성과 공신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자격증 등을 통한 전문화가 필요하다.

경비업체는 관리, 마케팅, 경비업무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본질적인 업무가 고객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 각종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이기 때문에 경비요원을 중심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경비요원은 고객과 대면하고 고객의 면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외접점에 위치하고 있어 경비요원의 자질과 능력이 바로 그 경비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고객충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고객들은 똑같은 능력을 가진 경비요원이 있다면 그 중에서 검정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호할 것이다.

자격증은 경비요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및 자질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받은 결과이다. 이 자격증은 고객에게 심리적 안정과 신뢰감과 든든함을 줄 것이다. 나아가 그 회사자체를 신뢰하고 선호하게 될 것이다.

### 2.1.4 종사자의 지속적인 실력 배양

흔히 자격증은 능력과 자질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경비요원에 대해 경비업자가 매월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중심의 경비업무의 특성상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격증은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성취하는 과정이다. 경비요원들은 단계별로 능력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자격증에 입문하는 경우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능력을 배양할 것이다.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자격은 국가자격과의 호환 및 학점인정, 공무원 응시할 때 가산점 등이 있으므로 다단계로 설정된 경우 높은 수준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다.

### 2.1.5 경비산업의 활성화

민간경비산업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사회는 다양화·세분화되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현재 민간경비분야 중

## 2.2 민간경비 자격증의 현황

### 2.2.1 국가자격증

민간경호·경비관련 국가자격은 개별 법령인 경비업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경비지도사가 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자이다.

### 2.2.2 국가공인자격증

민간경호·경비 관련 국가공인 자격은 경찰청 소관으로 (사)열쇠관리협회가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열쇠관리사이다.

### 2.2.3 민간경비 자격증

#### 2.2.3.1 (사)한국경비협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는 2006년부터 신변보호사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 2.2.3.2 국제경호협회

국제경호협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격종목은 경호원은 3등급(1급, 2급, 3급)과 경호사 단일급이 있다. 자격의 취득, 평가시험, 자격관리, 검정방법 등은 경호자격운영규정(1994.4.12제정)과 경호자격 운영보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2]

시험응시료와 자격발급비, 가입비, 연회비 등은 <표 1>과 같다.

<표 1> 국제경호협회 자격증 발급비용 등[17]

구 분	이론시험응시료	실기시험응시료	자격발급비	인증심사료	협회가입비	협회연회비
경호원1급	200,000	200,000	300,000	200,000	50,000	60,000
경호원2급	100,000	100,000	250,000	100,000	50,000	60,000
경호원3급	50,000	50,000	200,000	50,000	50,000	60,000
경호사	200,000	200,000	300,000	200,000	50,000	60,000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는 영역은 민간조사업분야, 교통유도경비업 등이다.

민간경비분야가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을 신설하여 우수한 인재를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시험에 합격하여 경호원 및 경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협회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다. 회원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국제경호협회 부설 아카데미에서는 경호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 과정 교육훈련 연수생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있다[17]. 연수기간은 3개월 (240시간)이며, 1일 평균 4시간(월-금요일) 교육한다. 등록비 및 교재비, 피복비는 총 284만원이다.<sup>1)</sup>

국제경호협회의 경호사 및 경호원 자격취득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경호사 및 경호원 자격취득 현황

구 분	경 호 사	경 호 원			비 고
		1급	2급	3급	
1994		1	2306		1,2급제도시행
1995		16	3750		
1996		9	460		
1997			472		
1998			360		
1999			4	633	3급제도신설
2000				521	
2001	1			750	경호사제도신설
2002		4		274	
2003	37	1		346	
2004	45	1	7	296	수시시행
2005	12	2		124	전국통합3급시험최초시행
합계(명)	83	34	7,361	2,820	
총합계(명)			10,432 명		

자료: 국제경호협회자격평가원

### 2.2.3.3 대한민간조사협회

대한민간조사협회(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의 명칭변경)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격종목 중 민간경비와 관련된 것은 PIA사실정보탐경사, 특수경호사 등이 있다.<sup>2)</sup>

### 2.2.3.4 대한민간조사원연합회

대한민간조사원연합회(대한민간조사원협회의 명칭변경)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격종목은 민간조사원1급, 2급, 3급이 있다.<sup>3)</sup>

1) 이종 교육비는 210만원(1월기준70만원), 협회가입비 5만원, 협회연회비 6만원, 자격응시료 10만원, 자격발급료 20만원, 교재(이론,실기) 및 피복비 33만원이다.

2) 자세한 내용은 <http://www.rokpia.com>을 참조할 것.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pi.or.kr](http://cpi.or.kr)을 참조.

## 3.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1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도입취지

그동안 경비업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영세한 업체의 난립은 결국 저가입찰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이직함에 따라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문제해결 방안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로 경비원의 자격제도가 대두된 것이다.

자격증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정도를 평가 받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특히 능력중심사회에서 전문자격증을 관련 산업계와 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이다.

2006년 2월 2일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자치부령 318호)에 의한 경찰청의 ‘민간경비 교육기본 지

침'에 따라 직장단위 위탁제 교육이 교육기관제 교육으로 전환되어 경비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수준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인정받는 자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격제도를 발전시켜 우수한 경비원을 배출함으로써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6년부터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이하 경비협회라 함)가 주최하고 한국시큐리티지원 연구원의 자격평가원(이하 자격평가원이라 함)이 검정하는 방식으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이래 2010년까지 4차례 검정을 실시하였다.

### 3.2 신변보호사 검정 현황

#### 3.2.1 응시자격

2006년 제1회 신변보호사 응시자격은 2급은 4년제 대학 시큐리티 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 또는 3급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이며, 3급은 전문대학 시큐리티 관련학과, 경찰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이었다.

2007년(제2회)에는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경호·경찰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2006년도 제1회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3급 취득자 포함)이며, 3급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 경호·경찰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이었다.

2009년 직업능력개발원에 공인을 신청한 결과 전국 경찰 및 경호관련 대학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지적되어 2009년 제4차 시험부터는 응시대상자를 일반국민(만18세 이상, 경비업법 제10조제1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2009년과 동일하였다.

#### 3.2.2 시험과목과 배점

2006년 제1회 신변보호사 시험과목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이론과목은 경찰학·경호학·민간경비론·범죄학·경비업법·법학개론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였다. 이론과목 면제 대상은 ①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시큐리티 관련학과, 경찰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 ②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인정제의 시큐리티 관련학과, 경찰관련학과 재학 및 재학한 적이 있는 자 중에서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이었다.

이론과목 2개 과목에 대한 평가는 학점이 A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90점, B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80점, C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70점, D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60점으로 산정하였다.

실기과목은 경호무도와 체포·호신술로 하여 경호무도 50점, 체포·호신술 50점으로 총100점 만점으로 산정하였다.

2007년 제2회 시험부터 2010년 제5회 시험까지는 제1회와는 다르게 필기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과목은 민간경비론(10문항), 경비업법(20문항), 경호학(20문항) 등 50문항에 대해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평가하였다. 3급응시자는 경호·경비 관련학과목, 경찰 관련학과목, 법학 관련학과목 중 신변보호사 자격과 연관되는 과목으로 한정하여 1개 과목을 이수한 자는 이론(필기)시험을 면제하였다. 2009년 제4회부터는 등급을 통하여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기시험은 제1회와는 달리 세분하여 범인대응술(100점 만점)에 대한 정확도, 숙련도, 이해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이중 2급 응시자는 상당한 수준의 능력, 3급 응시자는 일반적 능력정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 3.2.3 접수 및 합격 현황

2006년(제1차) 합격률은 94.8%, 2007년(제2차) 합격률은 96.2%, 2008년(제3차) 합격률은 92.0%였다. 공인신청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검정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비지도사 시험 등 많은 자격시험 등이 수급을 고려하거나 또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홍보를 위하여 시험 초기에 합격률을 대폭 높이는 홍보성 특혜를 주고 있다. 신변보호사 제도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제1회-제3회까지 합격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제4회)에는 60.4%, 2010년(제5회)에는 57.83%로 대폭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응시자가 줄어들어 드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점차 변별력을 높여서 신변보호사자격증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표 3〉 신변보호사 응시 및 합격률

구분 연도	순서	1급				2급				3급				합계			
		접수	응시	합격	합격율	접수	응시	합격	합격율	접수	응시	합격	합격율	접수	응시	합격	합격율
2006	제1차	·	·	·	·	293	286	274	95.8	528	519	489	94.2	821	805	763	94.8
2007	제2차	·	·	·	·	926	868	835	96.2	294	265	255	96.2	1,220	1,133	1,090	96.2
2008	제3차	·	·	·	·	1,308	1,209	1,109	91.7	103	99	95	96.0	1,411	1,308	1,204	92.0
2009	제4차	·	·	·	·	1,166	1,050	634	60.38	·	·	·	·	1,166	1,050	634	60.4
2010	제5차	·	·	·	·	707	622	501	80.55	·	·	·	·	707	622	501	80.55
합계						4,400	4,035	3,353	83.10	925	883	839	95	5,325	4,918	4,192	85.23

주) 2009년(제4회)부터 등급을 통합하여 실시하였음.

### 3.3. 신변보호사 자격의 문제점

#### 3.3.1 응시대상자의 확대와 홍보

2006년(제1차)부터 2008년(제3차)까지 응시대상자를 전국 경찰 및 경호관련학과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각 대학의 학과장 및 조교 등의 대학조직을 활용하여 많은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접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2009년 공인신청 결과 응시대상자의 제한에 대한 지적이 있어 2009년(제4차)부터는 응시대상자를 18세 이상의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널리 홍보부족과 국가공인이 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일반인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경비협회의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뿐 아니라 일간지에 기획기사, 광고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3.3.2 필기시험과목의 문제

2006년(제1회)부터 이론과목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나 실제 제1회에는 면제대상을 두어 실제 필기시험을 실시되지 않았다. 이후 2007년(제2회)부터 2010(제5회)에 이르기까지 필기시험 총 50문항 중 민간경비

론 10문제, 경비업법 20문제, 경호학 20문제를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변보호사자격은 신변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정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변보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에 맞는 과목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평가대상인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경호학 등은 신변보호사자격을 검정하는데 아주 적합한 과목은 아니다. 민간경비론은 개론적인 과목으로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과목이다. 경호학은 흔히 협의의 신변보호로 보지 않고 광의의 경비와 호위로 규정할 경우 민간경비론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본다. 따라서 신변보호론 등과 같이 직접 관련된 과목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자격의 수준과 시험과목의 수준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즉 자격의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적합한 수준인데 비해 과목의 수준은 대학과정에 개설된 과목이기 때문이다.

#### 3.3.3 자격자의 활용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신설할 당시 신설 주체는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든지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개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들이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신변보호사 관련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수익증대 측면에서 개인 등이 자격을 신설·운영하여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신변보호사 자격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경비협회가 지원하기가 용이할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키는 기능을 한다. 신변보호사 자격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인 경비업체들이 취업에 최대한 연계시키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자격취득자에 대해 처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자격자의 활용실적 및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앞으로 자격증이 발급되어 자기만족이나 종이 상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경우 실제 경비업체 등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주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4. 한국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발전 방안

### 4.1. 경비협회의 공신력 제고와 자격증 활성화

국가자격과는 달리 민간자격은 자격의 공신력을 민간의 자격주체가 스스로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따라서 민간자격 관리자는 산업계와 사회의 당해 자격증 통용성,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설·운영해 나가야 한다.

민간경비분야의 민간자격증은 (사)한국경비협회가 주체가 되어 관리·운영하는 신변보호사를 비롯하여 그 외 개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들이 관리·운영하는 자격증이 적지 않다.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개인 또는 단체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실제 민간자격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격증 장사의 돈벌이 수단의 대상

이 되어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업법상 법정단체로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 교육·훈련 및 연구,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그 외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이므로 민간경비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로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협회가 신설·운영하는 신변보호사제도 등은 하루빨리 국가공인이 되어 민간경비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사)전국경비업협회가 간접검정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ASIS도 CPP 자격을 비롯하여 시큐리티 관련 자격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4.2. 경비업계의 협조와 지원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반영하고 활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그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는 한국경비협회가 신변보호사의 자격 주체가 되도록 추천했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업계를 대표할 뿐 아니라 한국 시큐리티의 중심이 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안심센터가 되어야 한다. 또 시큐리티 관련 산학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시큐리티 이론과 실제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경비가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가 종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것 또한 한국경비협회의 몫인 것이다.

경비협회가 주체가 된 민간경비 관련 자격증을 경비업계에서 외면당하는 경우 이 자격증은 노동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다. 경비업계의 중지를 모아 민간경비시장에서 인정받고 우대받을 수 있도록 경비협회와 경비업계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 4.3. 신변보호사 제도의 개선과 국가공인 시급

한국경비협회가 주체가 되어 2006년부터 다섯 차례 실시한 신변보호사 제도는 두 번의 공인신청을 했음에도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2009년의 지적사항은 ①전국 경찰 및 경호학과 등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점, ②합격률이 92~96%로 너무 높아 검정의 역할이 부족한 점, ③문제 출제의 투명성 및 출제 문제의 보안성 취약으로 검정체계가 미약한 점, ④국가공인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 등이다. 경비협회는 이들의 대부분을 시정하여 2009년 검정을 시행한 후 2010년 공인을 신청하였다. 2010년의 지적사항은 ①당해 연도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 선발, ②가점사항이 없는 점, ③자격의 수준과 시험과목의 수준 불일치, ④발급수수료의 과다, ⑤자격의 활용 실적 관리미비 등이다.

이러한 지적 사항은 자격의 본질이나 검정체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즉 고득점자 순 합격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경우에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며, 가점 부여 여부는 검정기관의 재량행위이며, 필요하다면 당장에 다음 시험부터 가점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격의 수준과 과목수준 불일치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나 수준으로 조정하면 되며, 발급수수료는 타 자격증과 비교하여 조정하면 될 것이다. 자격증의 활용실적이나 관리미비는 국내 대부분의 자격주체가 합격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실정이나 모범적으로 신변보호사의 경우는 이를 적극 추진하면 될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나 경찰청에서는 공신력 있는 법정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민간경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정도를 평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격증 홍수시대에서 무분별한 민간경비 자격증의 피해자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 5. 결 론

경비업계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해결방안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구성원의 자질향상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6]

우선 구성원의 자질문제와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는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전문적인 자격증은 결국 고객을 보호하고 경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민간경비 관련 민간자격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비협회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민간자격은 자격의 공신력을 민간의 자격주체가 스스로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그동안 민간경비 관련 자격증을 개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들이 관리·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개인 또는 단체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실제 민간자격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격증 장사의 돈벌이 수단 대상이 되어 피해를 볼 수 있다.

민간경비분야의 민간자격증은 법정단체인 (사)한국경비협회가 주체가 되어 관리·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다. 즉, 경비협회가 주체인 신변보호사 등을 공인하여 건전하게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우대하고 활용해 주어야 한다. 경비업계로서도 우수한 인력이 경쟁력을 높이고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자격을 취득하여 경비업계로 진입하는 경우 시큐리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민간경비가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가 종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경비협회가 주체가 되어 2006년부터 다섯 차례 실시한 신변보호사 제도는 두 번의 공인신청을 했음에도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나 경찰청에서는 공신력 있는 법정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민간경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정도를 평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공배완, “민간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 교육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제고”, 경호경비연구 제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5.
- [2] 국제경호협회, 경호자격규정집, 2005.
- [3] 김철수, 지식정보화시대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 [4] 박동균, “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 경호경비연구, 제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2.
- [5] 안황권, “민간경비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11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6.
- [6] 안황권·강민완, “민간경비원과 경찰의 협력이 범 죄예방에 미치는 영향”, 경호경비연구, 제10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5.
- [7] 이상철·안성조,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 [8] 정지운, “민간자격증의 의의와 전망”, 「경호경비연구」 제13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7.
- [9] 최선태, 민간경비산업의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2000.
- [10] (社)全國警備業協會, Security Time, vol.311, 2005.7.
- [11] 星澤哲也, 新警備業法令集, 東京: 東京法令出版, (1983); (社)全國警備業協會, 警備業法解説, 2009.
- [12] Becker, Donald C., Security Administration. Illinois: Charles C Thomas, 1985.
- [13] Cunningham, Willam C., John J. Stauchs, Clifford W. Van Meter.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 II. Butterworth-Heinemann, 1990.
- [14]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Protection Officers, Protection Officer Training Manual, 6th edition. Boston: Butterworth-Heinemann, 1998.
- [15] Johnson, Brian R. Principles of Security Management. NJ: Pearson Prentice Hall, 2005.
- [16] Simonsen, Clifford E., Private Security in America. NJ: Prentice Hall, 2000.
- [17] 국제경호협회, <http://www.ibga.co.kr>

## [저자소개]



안 황 권 (Ahn, Hwang-Kwon)  
 1981년 경기대학교  
 법정대학(행정학사)  
 1989년 경기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현 재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email : ahk@kgu.ac.kr